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09 무고
피 고 인 A
검 사 김태엽(기소), 고흥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세진(국선)
판 결 선 고 2021.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20. 11. 23.경부터 휴대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B와 연락하다가, 2020. 11. 29.경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B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개팅으로 연락을 주고 받던 남성으로부터 2020. 11. 29. 21:50경 호텔에서 데



이트강간을 당하였으니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계속하여 2021. 1. 6.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사건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2020. 11. 29. 21:50경 소개팅으로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20. 10. 26.경부터 휴대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C와 연락하다가, 2020. 11. 1.경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C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1. 22:00경 승용차 안에서 D(C가 사용한 가명)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으니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계속하여 2020. 12. 31.경 위 부산진경찰서 여청수사3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사건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D가 2020. 11. 1. 22:00경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5~10분 정도 만졌다'고 하면서, 'D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사본, 녹취록(차안대화내용) 사본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공판기일 이후 제출한 탄원서들을 통해 무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룬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고인의 고소장 및 경찰에서의 진술, B, C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C가 제출한 사건 당시의 녹취록, 피고인이 B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¹⁾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1) 피고인이 일단 자백을 한 이상 그 후에 이를 철회하고 그 자백을 번복한다 하더라도 위 법조의 적용에는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감경을 적용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명을 무고하였고 무고한 범죄의 내용도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무고를 당한 사람들이 실제로 기소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B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의 무고 당시 진술의 구체성 정도, 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_____